

# 美國의 國家情報基幹網과 著作權

저자: 丁相朝

발행년도: 1995

문헌: 著作權

권호: 32호 (1995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5]

## I. 머리말

\_ 國家情報基幹網, 초고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고속도로는 정보화시대 또는 디지털시대의 꽃을 피우게 될 핵심적인 社會間接資本이 될 것이다. 국가정보기간망의 구축은 대부분 정보(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음성정보와 동화상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대부분)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국가정보기간망을 통한 著作物의 流通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_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정보기간망의 구축에 따라 저작권법 또는 넓게 지적소유권법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세계 각국이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추진되고 있다. 1995년 11월 29일과 30일에는 日本에서 '情報通信網과 知的所有權'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 바, 이 곳에서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간망(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의 구축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2월에 '정보기간망사업단(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ITF)'을 구성하고 동사업단 내에 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을 조직하여 지난해에는 중간보고서가 출간되었고, 올 가을에 最終報告書(White paper)가 출간되었다. 유럽에서도 유럽공동체理事會(European Council of Ministers)가 중심이 되어 소위 유럽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_ 우리나라도 정보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연구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고에서는 1995년 9월 5일에 미국에서 발표된 '국가정보기간망과 지적소유권' 최종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 II. '國家情報基幹網과 知的所有權'에 관한 연구의 배경

\_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간망(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또는 흔히 말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나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2월에 '정

[36]

보기간망사업단(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ITF)'을 구성하였다. IITF는 로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관련된 연방기구들(주1)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 민간기업 및 각종 이익단체들과도 밀접한 협력하에 작업을 수행해 왔다. IITF는 동년 9월에 '국가정보기간망 정책과제(NII Agenda for Action)'를 마련하였고, 1995년 2월에 '세계정보기간망 협력과제(GII Agenda for Cooperation)'를 마련한 바 있다.

\_ IITF는 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 개의 위원회로 세분되어 있는데, 통신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신정책위원회(Telecommunication Policy Committee)'가 있고, 정보기술을 시범적인 분야로부터 응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응용·기술위원회(Committee on Application and Technology)'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정보기간망이 완전히 구축되고 활용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정책 과제들을 연구하기 위한 '정보정책위원회(Information Policy Committee)'가 있다. 또한, IITF에는 통신망 이용자, 통신망 사업자, 데이터 제공자 및 주정부 등의 정보보안(Security)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연구회(Security Issues Forum)'가 구성되어 있다.

\_ IITF의 '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브루스 레만 상무차관 겸 특허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IITF 통신정책위원회 내에 구성하였는 바, 국가정보기간망 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지적소유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적소유권법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및 제안을 하는 것을 주된 작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IITF 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IITF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연방기구들 안의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고 1993년 11월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받은 30명의 전문가 증언, 의견개진 기간 중에 제출된 약70건의 서면 의견을 참고하여, 1994년 7월 7일에 '중간보고서(Green Paper)'를 발행하였다.

\_ IITF지적소유권 중간보고서는 인쇄물의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IITF전자게시판의 전자파일의 송신에 의해서도 배포되었다. 그 후 워싱턴, 시카고, LA등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서면과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최종보고서(White Paper)'가 발행되었다.

### III. 技術의 發展과 著作權法

\_ 지적소유권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법 규정의 의미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에 법원은 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이 현저하여 법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의 개정을 신중히 모색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_ 저작권법은 그 탄생 초기부터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여 변화해 왔다. 사실, 새로운 종류의 복제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인쇄기가 발명되어 이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비로소 제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때로는 적절한 법 해석에 의하

[37]

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이 미쳐서 저작권법의 상당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_ 각국의 국내법과 저작권 관련 협약에 공통된 현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저작물 이용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저작권이 인정되어 왔고, 그에 상응한 법규정이 신설되어 왔다는 점이다. 寫眞, 映像著作物, 컴퓨터 프로그램, 音盤, 放送著作物, 有線放送프로그램등과 그에 관련된 규정들이 그 예이다. 국가정보기간망의 구축은 저작권법에 또 다른 도전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 IV. 著作物の 電送에 의한 配布

\_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배포할 수 있는 배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저작물의 전송행위(Transmission)가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_ 오늘날과 같은 초고속통신의 시대에는 저작물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송의 특징은, 저작물 원본이 전송 후에도 전송자의 컴퓨터 내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동일한 저작물이 동시에 다수의 수신자 컴퓨터에 전달되어 저장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전송행위를 염두에 두고 보면, 현행 저작권법하의 배포권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_ 이러한 맥락에서,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저작물이 전송에 의하여 일반공중에 배포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전송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배포권이 저작물의 전송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실사 저작물의 전송행위가 배포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송행위가 복제권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_ 그러나 복제권과 배포권이 동일인에 귀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한 사람들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송행위가 복제권 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전송행위가 배포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정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받은 자가 동 저작물의 전송행위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전송행위가 배포권 행사에 해당된다면, 복제허락을 받은 이용자(Licensee)의 전송행위가 배포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이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배포된 행사가 저작물의 전송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보다 명료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의 불명료성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되고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을 통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으로 인하여 국가정보기간망(NII)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생기므로, 그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_ 바로 이러한 판단에서,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저작물의

전송행위가

[38]

저작권자의 배포권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발전의 결과로 인하여 전송에 의한 배포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_ 물론,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모든 배포권 행사에 해당되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배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중에 대한 배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전자우편(E-mail)의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배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배포권에도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전송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 제한이 있을 수 있다.

\_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배포권의 개념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과 마찬가지로 논거에서, 수입의 개념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저작물이 국내에서 전송에 의하여 배포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부터 전송에 의하여 수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송에 의한 수입이 종이책이나 CD-ROM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종이책의 수입과는 달리 전송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관세청이 얼마만큼 저작권 침해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 V. 音盤에 의한 公演

\_ 통신망의 발전에 의하여 음반의 유통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음이 디지털 형태로 전자 기록장치에 고정된 것도 음반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음반 또는 녹음물은 일반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음반 또는 녹음물이 전송되는 것이 배포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또한 소비자들이 그러한 주문형 음악을 전송 받아서 저장하지 않고 감상만 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개념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주문형비디오(Audio-on-demand)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악의 작곡자 및 작사자로부터 공연의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녹음물 제작자에게 당해 공연에 대하여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_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녹음물의 전송이 배포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음물 제작자에게도 공연권을 부여하고 녹음물 전송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은 공연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공연권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제작회사들이 외국에서의 공연료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_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의 인정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공연으로 인하여 공연작품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음반제작자들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다른 저작권자들에게도 그러한 간접적인 이익은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만 공연권을 인정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저작권은 복제권과 배포권 등

[39]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다른 권리 실현에 대한 이익까지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들의 중복적인 인정과 중복적인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_ 예컨대, 소설의 초록이 잡지에 게재됨으로써 당해 소설의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초록을 게재하고자 하는 잡지사가 소설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게재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영화 제작 및 상영으로 인하여 당해 소설의 판매량이 증가하겠지만, 영화제작사는 소설가로부터 영화 제작에 관한 허락을 받고 계약조건에 따른 이용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_ 또 다른 혹자는, 음반제작자에게 공연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法定利用許諾의 제한을 받는 공연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망의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음악저작물과 음반 또는 녹음물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음반 또는 녹음물이라고 해서 저작권 또는 공연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적어지게 될 것이다.

## VI. 著作權의 制限 - 도서관에서의 이용

\_ 국가정보기간망이 발달하고 저작물이 디지털화되면 도서관들도 소위 디지털 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복제와 대여 등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백한 정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대학정보센터가 학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 또는 학생과의 사이에 온라인 정보전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의 종이책으로 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망 속의 정보까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인지 문제 된다. 특히,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複製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貸與라고 볼 것인지도 불명하기 때문이다.

\_ 대여라고 보는 경우에도,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저작권법이 공중대여권 (rental rights)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도서관에 의한 대여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지만, 공중대여권이 도입된다면 도서관의 대여행위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_ 도서관으로서는 소장 자료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여해 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하여 색인을 만들게 되는 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속의 색인을 각색하거나 차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한 후 당해 특정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도서관은 著作權侵害 또는 契約違反의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

\_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private use)또는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하여도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대하여 종이책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통신망 속의 저작물을 프린트해내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개인적 전자기록 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사적 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것이다. 또한,

[40]

私的利用 또는 公正利用의 범위를 벗어난 출력 또는 복제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구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보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_ 특히, Multimedia 또는 複合著作物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물 이용료 기준에 의해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계산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_ 美國聯邦著作權法 제108조에 규정된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위한 著作權制限에 대해서도, 컴퓨터시대 또는 초고속정보통신의 시대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부적합한 예외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다. 예컨대, 혹자는 장래의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의 전송에 대한 허락이 디지털 형태의 배포에 대한 허락의 대부분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도서관에서의 프린트아웃 등 복제행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_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한편으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을 인정해야 할 公共의 利益(public interest)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발적인 이용허락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임을 인정했다.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도서관이 우리 인류의 총체적인 지식을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이 확대되어 디지털화 복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_ 즉,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및 보존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현행 규정은, 소위 電子圖書館(Computerized library)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본 3부를 만들어 2부는 보존해 두고 1부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VII. 著作權侵害 防止技術의 保護

\_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용이해진 반면에 그러한 침해를 적발하고 저작권을 행사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어서,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형태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복제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마저도 또 다른 기술에 의하여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복제 방지기술이 법적으로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 그러한 기술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_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무단복제 방지기술이 보호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국가정보기간망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단 복제 방지기술의 법적 보호는 일반공중의 이익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그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방법, 체제 등(즉, 저작권 침해 방지장치)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력화하거나 회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장치나 제품 또는 그러한 장치나 제품의 부품을 제조, 배포, 수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이나 효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著作権法 改正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41]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때로는 저작물의 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작권자 스스로 저작물 이용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著作物侵害 防止技術의 保護는 正當한 權限 없이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게 된다.

— 다른 한편,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 또는 저작권 제한 규정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즉,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구책에 의하여 공정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그러한 공정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등의 규정이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로 인하여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극장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극장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거나 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로 하여금 그러한 입장료 징수나 비밀번호 요구를 금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의 허용에 관한 법 규정과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다.

— 더욱이,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가 저작권법상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正當한 權限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의 무력화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그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방지기술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공유물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방지기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 방식은 이미 활용된 선례도 있다. 예컨대, 디지털오디오 부과제도의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서, 디지털오디오 녹음장비나 관련 인터페이스장비 내에 포함된 연쇄복제 방지 시스템이나 유사한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회로를 무력화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미국연방저작권법 제1002조). 이와 유사한 규정은 통신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통신법 제605조에 의하면, 위성 케이블 프로그램의 암호를 권한 없이 해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나 장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전자식 또는 기계적 장치나 장비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변형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7 U.S.C.Sec.605(e)(4)]. 국경을 초월한 위성신호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한 규정이 北美自由貿易協定 제1707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도 복제 방지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VIII. 著作權管理情報

\_ 장래에는 저작권자의 이름과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등과 같은 著作權管理情報(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가 국가정보기간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에 긴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저작권관리정보를 통해서, 저작물 이용자들은 국가정보기간망

[42]

에서 특정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관리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됨으로써 국가정보기간망 속의 저작물에 관한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용허락에 관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s)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_ 특히, 국가정보기간망이 발달하고 그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저작물의 유통이 급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작권자로서나 저작물 이용자 모두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방식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그러한 수요는 著作權集中管理에 의하여 충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래에는 저작권 관리정보의 정확성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오류의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저작권 관리정보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IX. 特許權

\_ 국가기간정보망에 이용되는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정보망은 先行技術(prior art)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주고 결과적으로 特許要件의 충족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기간망 속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선행기술로 될 수 있는지가 보다 명백히 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의 선행기술 정보의 배포 정도, 최초 공개의 내용, 공개된 일자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미국 特許商標廳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先行技術로 이용됨에 있어서 그 정보의 내용과 공개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X. 商標權

\_ 정보통신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각 개인 또는 기업들이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보통신주소(E-mail address) 또는 Domain address를 가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Domain address또는 정보통신주소는 숫자보다도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문자주소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또는 상호와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문자의 정보통신 주소가 사용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기간망(NII)또는 세계정보기간망(GII)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The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이 충분한 용통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_ 따라서,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미국특허상표청으로 하여금, 국제분류에 관한 WIPO 전문가회의에서 현대적인 정보기술의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분류체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IITF지적소유권 실무작업반은, 정보기간망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특허상표청이 국내상품분류기준도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주1)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과 특허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뿐만 아니라 통상대표부, 과학기술청, 국립기술표준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교육부, 동력부 등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